

미국 연방 법제상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 판결로 하는 제재를 중심으로 -

이 준 범*

【목 차】

I. 서론	III. 한국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정에 주는 시사점
II. 미국 연방 디스커버리 법제상 당사자 제재에 관한 법리	1. 제재 신청
1. 당사자 제재의 근거	2. 패소판결의 내용
2. 판결로 하는 제재	3. 패소판결에 대한 상소
3. 판결로 하는 제재의 사례	IV. 결론

【국 문 요 약】

대법원이 2021년 구성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문서제출명령제도를 개편한 한국식 디스커버리 도입을 제안하며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안 중 하나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상 디스커버리 제재 법리를 살펴 위 패소판결을 운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이 논문 제II장에서는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법리를 제재인 기각판결(dismissal)과 제재인 인용판결(default judgment)을 중심으로 살핀다. 제III장에서는 위와 같이 소개한 법리가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패소판결을 정하여 운영할 때 주는 시사점을 살핀다.

이 논문은 2024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으로 연구하였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우선, 판결로 원고를 제재할 때는 중국판결에 해당할 것임을 전제로 청구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병합되었으면 어떠한 판결을 하게 될 것인지 살핀다. 판결로 피고를 제재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병합되었으면 어떻게 중국판결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핀다. 또한, 어떠한 때 제재인 인용판결을 중간판결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상소가 있었을 때 상소심이 적용할 심리기준을 고려한다.

I. 서론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년 민사소송의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실제적 진실에 부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¹⁾ 제도를 마련하고자,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을 하였다.²⁾ 대법원은 2021년 디스커버리 연구반(이하 ‘디스커버리 연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2022. 10.경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³⁾ 위 보고서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개편한 한국식 디스커버리 도입을 제안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9조⁴⁾와

- 1) Discovery를 ‘디스커버리’로 쓰는 견해로, 전원열,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인권과정의 제501권, 대한변호사협회(2021), 111면; 이계정,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9호, 사법발전재단(2022), 213면.
- 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정보, 회의결과, 제23차 회의 결과안내,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4&gubun=944> (2023. 12. 08. 확인).
- 3)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정보, 회의자료, 제23차 회의자료, 4.[자문회의의 23차]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7,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0&gubun=943> (2023. 12. 08. 확인).
- 4) 디스커버리 연구반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350조⁵⁾를 개정하여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고 하였다.⁶⁾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민사소송법 제350조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국 ①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②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③ 패소판결, ④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⑤ 위반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민사소송법 제350조 개정안의 제재 방법이다.⁷⁾

이 논문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상 디스커버리 제재 법리가 위 제재 방법 중 패소판결에 관하여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이 논문 제II장에서는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법리와 실무를 제재인 기각판결(dismissal)⁸⁾과 제재인 인용판결(default judgment)⁹⁾을 중심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 디스커버리 연구반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350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일상적인 시스템의 운용 중에 특별한 사정 없이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대법원, 앞의 자료(주 3), 157-163면.
- 7) 디스커버리 연구반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349조.
- 8)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에서 'dismissal' 또는 'dismiss'는 한국 민사소송 절차의 청구기각 뿐만 아니라 신청기각, 소각하, 신청 각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6면 각주 17. 이 논문에서는 dismissal이 원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때를 연구하므로 편의상 '제재인 기각판결'로 원칙적으로

으로 살핀다. 제III장에서는 위 미국 연방 법리가 한국식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로 패소판결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주는 시사점을 살핀다.

II. 미국 연방 디스커버리 법제상 당사자 제재에 관한 법리

1. 당사자 제재의 근거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a)는 제공 명령 신청(motion to compel)에 관하여 정한다.¹⁰⁾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b)에 따르면 제공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신청을 할 수 있다.¹¹⁾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b)(2)(A)는 위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예시하였는데, 그중에는 ① 제37조(b)(2)(A)(v)에 따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제재인 기각판결(dismissing the action or proceeding in whole or in part), ② 제37조(b)(2)(A)(vi)에 따른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제재인 인용판결(rendering a default judgment against the disobedient party)을 정하였다.¹²⁾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b)에 의한 위 제재는 공정(just)

번역한다.

9) 'Default judgment'를 '결석판결'로 번역하는 견해로, 오대성,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결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법학논총 제21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2014), 647면; '결석재판'으로 번역하는 견해로, 김도훈,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63면; '해태판결'로 번역하는 견해로, 박지원,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의무공개제도와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제5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23), 117면. 이 논문에서는 default judgment가 피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때를 연구하므로 편의상 '제재인 인용판결'이라 번역한다.

10)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37(a) Motion for an Order Compelling Disclosure or Discovery.

11) Paul W. Grimm, Charles S. Fax & Paul Mark Sandler, Discovery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330 (4th ed. 2020).

12) FRCP 37(b)(2)(A) Motion for an Order Compelling Disclosure or Discovery.

하여야 하고, 명령의 대상인 특정한 청구(claim)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¹³⁾

한 법원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37(b)가 제재를 정한 목적을 ① 당사자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 ② 명령의 준수 보장, ③ 일반예방적 억제(general deterrent) 기능의 기대라고 설명하였고,¹⁴⁾ 다른 법원은 그 목적을 위반한 자를 벌하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c)에 따르면 공개(disclosure)하지 않거나, 디스커버리 답변을 보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신청할 수 있고,¹⁶⁾ 이때도 법원은 제재인 기각판결이나 제재인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¹⁷⁾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d)는 당사자가 진술녹취(deposition)를 참여하지 않는 때 등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¹⁸⁾ 마찬가지로 제재인 기각판결과 제재인 인용판결을 두었다.¹⁹⁾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e)는 전자적 정보를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하지 못하였을 때에 관한 제재 정도를 2단계로 정하였다.²⁰⁾ 먼저, 당사자에게 전자적 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아 그 정보가 멸실되어 불이익(prejudice)이 있었으면 법원은 그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²¹⁾ 단,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13) *Insurance Corp. of Ireland, Ltd. v. Compagnie des Bauzites de Guinee*, 456 U.S. 694, 707 (1982).

14) *Davis v. Uhh Wee, We Care Inc.*, Civil Action No. ELH-17-494, 2019WL3457609, at 6 (D. Md. July 31, 2019).

15) *Red Wolf Energy Trading v. Bia Capital Mgmt., Llc*, 626 F.Supp. 3d 478, 500 (D. Mass. 2022).

16) FRCP 37(c) Failure to Disclose, to Supplement an Earlier Response, or to Admit.

17) Paul W. Grimm ET. AL., 앞의 책, 330면.

18) FRCP 37(d) Party's Failure to Attend Its Own Deposition, Serve Answers to Interrogatories, or Respond to a Request for Inspection.

19) Paul W. Grimm ET. AL., *supra*, at 330; FRCP 37(d)(3) Types of Sanctions. Sanctions may include any of the orders listed in Rule 37(b)(2)(A)(i)-(vi).

20) FRCP 37(e) Failure to Preserv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21) *Microvention, Inc. v. Balt USA, LLC*, Case No. 8:20-cv-02400-JLS-KES, 2023WL7476998, at 4

가 소송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²²⁾ 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37조(e)(2)(C)는 구체적으로 제재인 기각판결이나 제재인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고(dismiss the action or enter a default judgment) 정한다.²³⁾

법원에게는 변호사의 사건 수행 과정 중 권한 남용을 포함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제재할 내재적 권한도 있다.²⁴⁾ 미국 연방대법원은 *Chambers v. NASCO, Inc.* 사건에서 연방 법률인 28 U.S.C. Section 1927과 제재를 정한 연방 민사소송규칙은 악의로 한 행위(bad-faith conduct)에 관해 제재할 법원의 내재적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²⁵⁾ ① 어떠한 행위가 제재에 관한 연방 법률이나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원은 법원의 내재적 권한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② 법원은 연방 법률이나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도 법원의 내재적 권한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²⁶⁾

법원은 이러한 내재적 권한을 근거로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관해 제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²⁷⁾ 법원이 내재적 권한을 근거로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관해 제재하려면 고의나 악의(bad faith)에 의해 법원 명령을 위반하였을 것을 요구한다.²⁸⁾

2. 판결로 하는 제재

판결로 하는 제재는 극단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든, 법원의 내재적 권한에 의하든 쉽게 제재하면 안 된다.²⁹⁾

(C.D. Cal. Oct. 5, 2023).

22) *Id.*

23) FRCP 37(e)(2)(C).

24) Paul W. Grimm ET. AL., 앞의 책, 416면.

25) *Chambers v. NASCO, Inc.*, 501 U.S. 32, 46 (1991).

26) *Id.* at 50.

27) Paul W. Grimm ET. AL., 앞의 책, 416면.

28) *Id.*

이러한 제재는 당사자가 사법절차나 디스커버리 절차의 진실성을 훼손해 사건이 더 이상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³⁰⁾ 이러한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① 사건의 바른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사기적 소송전략과 ② 반복적인 법원 명령 위반이 포함된다.³¹⁾ 법원은 당사자가 ① 위증에 관여하였거나, ② 증거를 조작하였거나, ③ 증거를 태우거나 파쇄하였거나, ④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삭제하는 등 고의로 증거를 멸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같은 예외적일 때에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재(terminating sanction)를 할 수 있다.³²⁾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① 소송의 신속한 결론에 관한 공공의 이해(the public's interest in expeditious resolution of litigation), ② 사건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원의 필요(the court's need to manage its docket), ③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위험(the risk of prejudice to the other party), ④ 실제적 진실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바라는 공공정책(the public policy favoring disposition of cases on the merits), 그리고 ⑤ 덜 극단적인 제재의 가능성(the availability of less drastic sanctions)을 고려하여야 한다.³³⁾ 그러나 위 요소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³⁴⁾ 다만,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 또는 당사자의 무능력(simple negligence, misunderstanding, or a party's inability)으로 인하여 위반한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³⁵⁾

증명의 정도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간 입장은 갈린다. 제7 연방항소법원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가 증명의 정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29) American Career College Inc. v. Medina, Case No. CV 21-698 PSG (SKx), 2023WL8000279, at 5 (C.D. Cal. May 17, 2023).

30) Id.

31) Id.

32) Pension Committee of University of Montreal Pension Plan v. Banc of America Securities, LLC., 685 F. Supp. 2d 456, 470 (S.D.N.Y. 2010).

33) American Career College Inc. v. Medina, Case No. CV 21-698 PSG (SKx), 2023WL8000279, at 6 (C.D. Cal. May 17, 2023).

34) Id.

35) Johnson v. New Destiny Christian Center Church, 324 F.R.D. 404, 414 (M.D. Fla. 2018)

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의 심사기준은 사실일 가능성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보다 클 것(preponderance of evidence)이었다.³⁶⁾ 이와 달리 콜롬비아 구 연방지방법원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 37조(b)(2)에 의하여 제재인 인용판결(default judgment)을 하려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⁷⁾ 또한, 콜롬비아 구 연방항소법원은 법원의 내재적 권한으로 제재인 인용판결(default judgment)을 하려면 사실일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큰(preponderance of evidence) 것만으로 부족하고,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³⁸⁾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재인 인용판결을 하려면, 원고 주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³⁹⁾ 제1심법원이 제재인 인용판결을 할 때 기록상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으면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된다.⁴⁰⁾

연방법원이 제재인 인용판결을 하려면 ① 소송의 신속한 결론에 대한 공공의 이해, ② 사건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원의 필요, ③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위험, ④ 실체적 진실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바라는 공공의 목표, 그리고 ⑤ 덜 심각한 제재의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⁴¹⁾ 단, 제1심법원은 위 요소들을 고려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고, 항소심 법원은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제1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심사한다.⁴²⁾ 항소심 법원은 제재인 인용판결이 허용되는 범위의 제재 밖이었다는 점이 명확할 때만 제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⁴³⁾

2010년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 연방법원의 전자적 디스커버리에 관한

36) Ramirez v. T&H Lemont, Inc., 845 F.3d 772, 778-79 (7th Cir. 2016).

37) S.E.C. v. China Infrastructure Inv. Corp., 189 F. Supp. 3d 118, 127-28 (D.D.C. 2016).

38) Shepherd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62 F.3d 1469 (D.C. Cir. 1995).

39) Solvay Specialty Polymers USA v. Zhengguo (Leo) Liu, 331 F.R.D. 187, 190 (N.D. Ga. 2019).

40) Id. at 193.

41) United Construction Products, Inc. v. Tile Tech, Inc., 843 F.3d 1363, 1368 (Fed. Cir. 2016).

42) Id.

43) Id.

제재 결정 약 400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그중 36건에서 당사자의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인 기각판결이나 제재인 인용판결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⁴⁴⁾ 위 36건 중 20건은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건, 7건은 제공 의무 위반(failure to produce), 9건은 보존의무와 제공 의무를 모두 위반한 사건이었다.⁴⁵⁾ 위 36건 중 20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였고, 19건에서 법원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⁴⁶⁾

법원이 과실(mere negligence)만을 이유로 위 같은 제재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⁴⁷⁾ 36건 중 2건은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관한 제재였고, 나머지 34건은 고의에 의한 것(willful conduct)으로, 그중 20건은 악의(bad faith)에 의한 것이었다.⁴⁸⁾ 고의적 행위의 예는, 통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을 활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정보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이었다.⁴⁹⁾ 법원은 주로 제재의 법적 근거로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b)나 법원의 내재적 권한(the inherent power of the court)을 들었다.⁵⁰⁾

3. 판결로 하는 제재의 사례

가. 제재인 기각판결 예

(1) National Hockey League v. Metropolitan Hockey Club, Inc.

National Hockey League v. Metropolitan Hockey Club, Inc. 사건

44) Dan H. Willoughby, Jr., Rose Hunter Jones, & Gregory R. Antine, "Sanctions for E-discovery Violation: By the Numbers", 60 Duke Law Journal 789, 805 (2010).

45) Id. at 805-06.

46) Id. at 806-07.

47) Id. at 808.

48) Id.

49) Id.

50) Id. at 809-10.

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질문서(interrogatories)에 대한 답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제재를 하였다.⁵¹⁾ 그러나 제3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였다.⁵²⁾

제1심법원은, 법원이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원고는 기한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주요사실에 관한 질문서에 관한 실질적 답변을 17개월이 넘게 하지 않은 것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것이라 하였다.⁵³⁾ 제1심법원은 원고가 답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재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경고하였음에도 원고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서, 만약, 이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사실관계에서도 청구기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⁵⁴⁾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고려할 상황을 들어 제1심법원 판단을 파기하였다.⁵⁵⁾ 항소심 법원은 소송계속 후 상당 기간은 양 당사자 모두 디스커버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으며,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계속 중 교체되며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였다.⁵⁶⁾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관한 상급심 법원의 심사기준은 연방대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이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제1심법원의 지위에서 판단한다면 청구를 기각할 것인지가 아니라, 제1심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라고 하였다.⁵⁷⁾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⁵⁸⁾

특히,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의 위반행위를 벌하기 위해서뿐만

51) *National Hockey League v. Metropolitan Hockey Club, Inc.*, 427 U.S. 640, 640 (1976).

52) *Id.*

53) *In re Professional Hockey Antitrust Litigation*, 63 F.R.D. 641, 656 (E.D. Pa. 1974).

54) *Id.*

55) *In re Professional Hockey Antitrust Litigation*, 531 F.2d 1188, 1193-95 (3rd Cir. 1976).

56) *Id.* at 1193-94.

57) *National Hockey League*, 427 U.S. at 643.

58) *Id.* at 644.

아니라 다른 사건 당사자들의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제1심법원에 위와 같은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⁹⁾ 연방대법원은, 만약 항소심 법원의 재판을 유지한다면, 비록 이 사건 당사자는 앞으로 디스커버리 명령을 따르더라도,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이 디스커버리 명령을 일단은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항소심 법원의 재판을 과기하였다.⁶⁰⁾

(2) French v. M&T Bank

French v. M&T Bank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디스커버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의 디스커버리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서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진술녹취 일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재를 신청하였다.⁶¹⁾ 또한, 연방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없는 원고에게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해 디스커버리 관련 협의를 하라고 명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었다.⁶²⁾

연방법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원고가 디스커버리 요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디스커버리 요구에 답변도 하지 않은 점, 증언녹취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제재라 하였다.⁶³⁾

59) Id.

60) Id.

61) French v. M&T Bank, 315 F.R.D. 695, 696 (N.D. Ga. 2016).

62) Id.

63) Id. at 696-97. 비록 법원이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사정을 봐주어야 하지만(should show a leniency), 원고가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명령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디스커버리 명령을 위반하면 청구를 기각당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를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 한 사례로, *Haji v. NCR Corporation*, 834 Fed. Appx. 562, 562-64 (11th Cir. 2020).

(3) Eastern Colorado Seeds, LLC v. Agrigenetics, Inc.

Eastern Colorado Seeds, LLC v. Agrigenetics, Inc.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⁶⁴⁾ 원고가 그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액 계산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였어야 했다.⁶⁵⁾ 원고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어기자 피고는 제공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제공명령을 하면서 이 명령을 위반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⁶⁶⁾ 원고가 위 명령을 위반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37조(b) 등을 근거로 제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⁶⁷⁾

제10 연방항소법원은 법원 명령을 위반한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상소가 있으면 심사기준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하였다.⁶⁸⁾ 제10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⁶⁹⁾

나. 제재인 인용판결 예**(1) Anderson v. BNSF Railway Company**

Anderson v. BNSF Railway Company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철도길 인근에서 일하던 중 철도 길에 너무 가까이 설치된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쳐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⁷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가 표지판을 점검하

64) Eastern Colorado Seeds, LLC v. Agrigenetics, Inc., Civil Case No. 19-cv-01885-LTB, 2021 WL688873, at 1 (D. Colorado Jan. 21, 2021).

65) Id.

66) Id. at 3-5.

67) Id. at 5.

68) Eastern Colorado Seeds, LLC v. Agrigenetics, Inc., No. 21-1057, 2021WL6102097, at 2 (10th Cir. Dec. 23, 2021).

69) Id.

기 전에 피고가 이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제재를 신청하였다.⁷¹⁾

연방지방법원은 법원의 내재적 권한에 근거하여, 피고가 한 고의적 증거인멸에 관한 제재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며, 피고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금하였다.⁷²⁾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배심재판에서 쟁점은 오로지 손해액만 남는다고 하였다.⁷³⁾ 또,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⁷⁴⁾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명세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하였다.⁷⁵⁾

(2) Freeman v. Giuliani

Freeman v. Giuliani 사건에서 피고는 명시적으로 디스커버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⁷⁶⁾ 법원은 이 사건처럼 디스커버리 의무 이행이 부족하고, 관련 있는 정보가 더 제공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정보들이 보존의무 위반으로 멸실되었을 것으로 여겨져 원고가 원고 주장을 증명하거나 피고의 항변을 다루기 어렵게 되었음이 명백한 때는 피고에

70) Anderson v. BNSF Railway Company, No. 3:22-cv-00012-RGE-WPK, 2023WL4418221, at 1 (S.D. Iowa July 6, 2023).

71) Id.

72) Id.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상 중간판결과 비슷하다.

73) Id. 미국 연방 법리상 제재인 인용판결을 할 때 소장의 주장에 관해 자백을 간주하지만, 손해액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Directv, Inc. v. Asher, No. Civ.A. 03-1969, 2006WL680533, at 1 (D.N.J. Mar. 14, 2006); William v. Heslin, Civil No. 06-3497, 2007WL2891990, at 1 (E.D. Pa. Sept. 27, 2007).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인 인용판결을 할 때도 손해액은 자백을 간주하지 않는다. Priest v. Brummer, No. 1:06-CV-065-TS, 2008WL2788759, at 3 (N.D. Indiana, July 18, 2008); Opportunities Development Group, LLC v. Andruss, No. 1:14-cv-62, 2015WL2089841, at 8-10 (E.D. Virginia Apr. 30, 2015); Ramshaw v. Ehret, No. 4:20-CV-00359-NCC, 2023WL6214875, at 2 (Sept. 25, 2023) 등.

74) Anderson, 2023WL4418221, at 1.

75) Id. at 13.

76) Freeman v. Giuliani, Civil Action No. 21-3354 (BAH), 2023WL5600316, at 12 (D.C. Aug. 30, 2023).

대한 제재인 인용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⁷⁷⁾

법원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e)(2)(c)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b)(2)(a)(vi)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defamation) 등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punitive damages claims)에 대하여 제재인 인용판결을 하였다.⁷⁸⁾ 다만, 종국판결(final judgment)을 하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변론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였다.⁷⁹⁾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가진 일정한 자료, 예를 들어 피고의 순자산(net worth)에 관한 자료를⁸⁰⁾ 여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⁸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피고의 행위 내용이 고려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⁸²⁾ 법원은 이에 따라 ① 피고가 2023. 9. 20.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후 있을 변론에서 그 관련 자료를 쓸 수 없고, ② 이를 위반하면 배심에게 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고가 고의로 그의 순자산을 적게 보이기 위하여 피고의 금융 자산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하였다고 추론해야 한다고 하였다.⁸³⁾ 법원은 2023. 9. 20. 전에 위 자료가 제출되면 배심에게 ②의 내용을 설명하되, ‘추론해야 한다’를 ‘추론할 수 있다’로 바꾸어 설명할 것이라 하였다.⁸⁴⁾

또, 법원은 원고가 한 피고의 디스커버리를 강제해 달라는 신청에 관해 발생한 비용인 \$89,172.50 미국 달러와 그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77) Id.

78) Id. at 2.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상 중간판결과 비슷하다.

79) Id. at 26.

80) Id. at 22.

81) Id. at 24.

82) Id.

83) Id. at 23.

84) Id. at 26. 즉, 법원은 청구원인 부분에 관해 한국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의 원인에 관한 중간판결과 비슷한 제재적 인용판결에 더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해 배심(jury)에 대한 불리한 사실의 추론(adverse inference) 지시의 제재, 그중에서도 강제적 불리한 사실의 추론의 제재를 추가한 것이다. Id. at 20, 26. 불리한 사실 추론의 제재 범위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재 신청에 관해 원고에게 발생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⁸⁵⁾

(3) Mey v. Phillips

Mey v. Phillips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위법하게 전화 마케팅(telemarketing)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⁸⁶⁾ 피고는 제1심 법원의 디스커버리 명령을 거부하며 개시하여야 할 자료를 숨기기를 반복하였고, 법원은 2022. 4. 4.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제재 대상임을 인정하여 제1심법원은 결국 피고에 대한 제재적 인용판결을 하며, 손해배상액만을 쟁점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 하였다.⁸⁷⁾

그 후 이 사건은 배심재판(jury trial)에서 법원 재판(bench trial)으로 변경되었고, 법원은 법정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2022. 7. 5. 피고는 원고에게 828,801.36 미국 달러의 손해배상금⁸⁸⁾ 및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였다.⁸⁹⁾

피고는, 제재인 인용판결에 의할 때는 당사자가 유효한 소장(operative complaint)에 주장한 것을 넘어서는 범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 소장에 주장한 25건 가량의

85) Id. at 26.

86) Mey v. Phillips, 71 F. 4th 203, 208 (4th Cir. 2023).

87) Mey v. Castle Law Group, PC, CIVIL ACTION NO. 5:19-CV-185, 2022WL4356172, at 4 (N.D. West Virginia Apr. 4, 2022).

88) 이 금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진술서(affidavit) 등에 기재된 전화 소비자 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TCPA' 라 한다)과 서 버지니아 소비자 신용보호법(West Virginia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이하 'WVCCPA'라 한다)을 위반한 전화 수시 명세를 근거로 산정되었다. Mey v. Phillips, CIVIL ACTION NO. 5:19-CV-185, 2022WL3108034, at 1 (N.D. West Virginia July 5, 2022).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WVCCPA 위반을 이유로 558,801.36(= WVCCPA가 정한 법정 최대 손해액인 건당 5,373.09 미국 달러 X 위반행위 104건) 미국 달러, TCPA 위반을 이유로 270,000(= 법정 손해액 500 미국 달러 X 위반행위 180건 X 고의(willful and knowing)로 인한 3배 배상) 미국 달러, 합계 828,801.36 미국 달러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d. at 7. 법원은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산정하여 신청할 것을 명하였다. Id.

89) Id. at 7.

전화 마케팅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⁰⁾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법리는 일반론으로 맞다고 인정하였다.⁹¹⁾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위 소장에 구체적으로 주장한 25건의 전화 내역에 더하여 계속 비슷한 전화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들어 위 소장 후 있었던 전화들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겠다고 하였다.⁹²⁾

피고의 항소에 관하여 제4 연방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의 제재적 인용판결에 관한 심사기준은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이 있었는지라고 하였다.⁹³⁾ 제4 연방항소법원은 비록 제재인 인용판결(judgment by default)을 한 제1심법원의 재량 범위는 더 좁으나,⁹⁴⁾ 제1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다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⁹⁵⁾

(4) *Calsep A/S v. Dabral*

Calsep A/S v. Dabral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소프트웨어 상품의 코드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⁹⁶⁾ 소송계속 중 피고 회사는 법원의 명령들에 반하여 전자적 증거를 멸실하였다.⁹⁷⁾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재인 인용판결을 하였다.⁹⁸⁾ 그에

90) *Id.* at 1-2.

91) *Id.* at 2.

92) *Id.* at 2-3.

93) *Mey*, 71 F. 4th at 217.

94) *Id.* at 218.

95) *Id.* at 222, 225.

96) *Calsep A/S v. Dabral*, 84 F. 4th 304, 308 (5th Cir. 2023).

97) *Id.* 예를 들어, 피고는 법원의 자료를 조작하지 말라는 명령에 반하여 전자적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despite this Court's specific instructions on the record, only days before the Court imposed deadline for production, Defendants permanently deleted 13 change sets data from their source code control system.”) 등 반복적으로 디스커버리 의무를 위반하였다. *Calsep, Inc. v. Intelligent Petroleum Software Solutions, LLC*, NO. 4:19-CV-1118, 2021WL1729169, at 7 (S.D. Texas Apr. 29, 2021).

98) *Calsep A/S v. Intelligent Petroleum Software Solutions, LLC*, No. 4:19-cv-1118, at 2022WL 2813069, at 1 (S.D. Texas June 10, 2022).

따라 부판사(magistrate judge)⁹⁹⁾는 2022. 2. 18.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로 362,002.24 미국 달러를, 전문가 비용(expert costs)으로 374,130 미국 달러를 지급하라고 하였고,¹⁰⁰⁾ 2022. 6. 10.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실 손해액인(actual damages) 4,268,753 미국 달러 (= 2014년 손해액 1,452,136 미국 달러 + 2015년 손해액 1,526,511 미국 달러 + 2016년 손해액 1,290,106 미국 달러)를 지급하라고 하였다.¹⁰¹⁾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022. 7. 18. 위 판결을 승인하자,¹⁰²⁾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¹⁰³⁾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제재에 대한 심사기준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라고 하였다.¹⁰⁴⁾ 나아가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사는 명백한 오인(clear error)이 있는지라고 하였다.¹⁰⁵⁾ 제5 연방항소법원은 소송을 종료하는 유형의 제재를 할 때는 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37조의 명문에 나와 있는 요건에 더하여 ①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이 고의나 악의(bad faith)에 의한 것인지, ②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그 의무 위반을 한 것인지, ③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상대방 당사를 불리하게 하였는지(substantially prejudiced the opposing party), ④ 더 약한 제재는 요구되는 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¹⁰⁶⁾ 제5 연방항소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제1심법원이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기각하였다.¹⁰⁷⁾

99)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부판사에 관한 설명으로, 함영주, “미국연방지방법원 부판사제를 활용한 우리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6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12), 458-478면.

100) Calsep A/S v. Intelligent Petroleum Software Solutions, LLC, No. 4:19-CV-1118, 2022WL508334, at 6 (S.D. Texas Feb. 18, 2022).

101) Calsep A/S v. Intelligent Petroleum Software Solutions, LLC, No. 4:19-cv-1118, at 2022WL2813069, at 6 (S.D. Texas June 10, 2022).

102) Calsep A/S v. Intelligent Petroleum Software Solutions, LLC, No. 4:19-cv-1118, at 2022WL2806538, at 1 (S.D. Texas July 18, 2022).

103) *Dabral*, 84 F. 4th at 310.

104) *Id.*

105) *Id.*

106) *Id.*

(5) U.S. Dist. Ct. of Texas Sarco Creek v. Greeson

U.S. Dist. Ct. of Texas Sarco Creek v. Greeson 사건에서 원고는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¹⁰⁸⁾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 상표등록의 무효(cancellation)¹⁰⁹⁾를 구하였다.¹¹⁰⁾ 소송계속 중 원고가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 변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증거의 출처를 묻자 허위 진술하였음이 드러났다.¹¹¹⁾

원고와 피고는 모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는데, 주된 쟁점은 원고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 그 상표를 쓰지 않아 그 상표등록이 무효인지였다.¹¹²⁾ 즉, 쟁점은 2008년 내지 2009년경 상표등록 당시 원고가 상표를 사용하였는지였다.¹¹³⁾

원고는 위 당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보이기 위하여 상표가 표시된 2007년, 2008년 각 달력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¹¹⁴⁾ 그런데, 피고는 위 달력들이 기존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의를 하였고, 위 달력 사본에 나타난 상표에 등록 마크가 있는데 위 달력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2006년 말, 2007년 말경에는 원고가 상표등록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달력 사본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¹¹⁵⁾

법원은 원고에게 왜 위 자료를 그동안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위 달력의 진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명하고, 달력 원본을 법

107) Id. at 317. 항소심에서 손해액은 쟁점이 되지 않았다.

108) U.S. Dist. Ct. of Texas Sarco Creek v. Greeson, 167 F. Supp. 3d 835, 838 (S.D. Tex. 2016). 본 사건의 원고는 William Parmley, Sarco Creek Ranch LLC 등이다. Id. 따라서, 통상 적인 사건명 기재방법에 따르면 사건명이 Sarco Creek Ranch LLC. v. Greeson이나 Parmley v. Greeson일 것이나, 166 F. Supp. 3d 835이 사건명을 U.S. Dist. Ct. of Texas Sarco Creek v. Greeson라고 표하므로 그에 따라 기재한다. Id. at 835.

109) 한국 상표법상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이 논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하지 않는다.

110) Id. at 838.

111) Id.

112) Id. at 839.

113) Id. at 840.

114) Id. at 842.

115) Id.

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¹¹⁶⁾ 원고가 이를 하지 않자, 법원은 별도 기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그때까지 달력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저장장치를 가져올 것을 명하였다.¹¹⁷⁾

위 기일에서 원고는 선서 후 위 달력 파일들은 최근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재확인 중에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¹⁸⁾ 또한, 2007년, 2008년 달력 원본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¹¹⁹⁾ 그는 달력의 스캔 파일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를 기일에 가져왔는데, 그는 2008년경 달력 원본을 인근 복사업체에 가져가 스캔한 후 위 플래시 드라이브에 이를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²⁰⁾

법원은 피고가 위 플래시 드라이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¹⁾ 피고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전문가에게 맡겨 조사한 결과 위 달력 사진 파일들은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들을 붙여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면서,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을 한 원고에 대해 제재인 기각판결과 반소에 대한 제재인 인용판결을 구하였다.¹²²⁾ 원고는 위 파일들이 여러 이미지를 잘라 붙인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의 추가 조사 결과 위 플래시 드라이브는 2015년경 제조된 것임이 확인되었다.¹²³⁾

법원은 원고가 2007년, 2008년 달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b)를 위반한 것이나, 원고의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은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²⁴⁾ 그렇지만 법원은 별도로 제재할 내재적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였다.¹²⁵⁾

법원은 내재적 권한에 의한 제재를 하려면 악의(bad faith)가 있어야 하

116) Id.

117) Id.

118) Id. at 843.

119) Id.

120) Id.

121) Id. at 844.

122) Id.

123) Id.

124) Id. at 845.

125) Id.

고, 이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¹²⁶⁾ 그리고 법원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을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다.¹²⁷⁾

법원은 이러한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제재적 인용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⁸⁾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dismissed with prejudice), 원고 상표등록의 무효를 구한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였다.¹²⁹⁾

다. 정리

미국 연방 법리상 법원이 원고에 대한 제재로 제재적 패소판결을 하면 이는 중국판결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에 대한 제재로 제재적 인용판결을 할 때는 중간판결과 같이 피고의 책임만 법원이 제재적 인용판결을 하고 손해액을 정하기 위한 배심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면 이에 관해 중국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제재적 패소판결이나 제재적 인용판결에 관한 상소가 있으면, 항소심은 제재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에 판단 대한 심사는 명백한 오인(clear error)이 있는지를, 그 제재에 대한 심사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를 각 기준으로 하여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

III. 한국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정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 연구반 개정안 중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 346조 및 제34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126) Id.

127) Id. at 850.

128) Id. at 838.

129) Id. at 853.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3호로 패소판결을 정한다. 저자는 위 안에 관하여 미국 제재 법리 운용 예를 토대로 한국 민사소송 실무상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검토한다.

1. 제재 신청

우선,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제재인지 아니면 각호의 제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판결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패소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상대방 당사자는 각 호의 제재가 아니라 ‘제재’ 그 자체를 신청하고, 제재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적절한 제재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제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신청한 제재가 과하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을 우려하여 각호의 제재를 모두 신청하게 될 것이다. 또, 그중 일부가 기각되면 이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본안과 거리가 먼 파생적 재판이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아래와 같다.

디스커버리 연구반 개정안	저자 안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u>제재</u> 신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생략)	1. (생략)
2. (생략)	2. (생략)
3. 패소판결	3. 패소판결
4. (생략)	4. (생략)
5. (생략)	5. (생략)

패소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중국판결이므로 제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패소판결을 하지 않을 사안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법원이 3호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한 후¹³⁰⁾ 3호가 아닌 다른 제재를 하거나, 제재 신청을 기각하면 된다.

2. 패소판결의 내용

가.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

원고에 대한 제재로서의 패소판결은 중국판결일 것인데,¹³¹⁾ 이때 소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생각건대, 디스커버리 연구반 개정안은 패소판결이라고만 정하므로, 법원은 제재 대상인 행위의 대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인 행위의 대상이 본안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제재 대상인 행위의 대상이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소를 각하할 것이다.

만약, 원고가 서로 양립하는 복수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그 전부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단순병합 중 일부가 제재 대상일 때 패소판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와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단순병합이 되었고, 원고가 그중 대여금 청구에 관해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청구 부분만 제재로서 패소판결을 하고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분은 별도로 실제 판단할 것인지 문제다. 생각건대, 원고가 원칙적으로 그의 의사로 단순병합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제재 효과를 더 강하게 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전부 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다

130) 민사소송법 제142조.

131) 위 II. 3. 가. 참조.

고 생각한다. 이는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에서도 다르지 않다.

주관적 병합인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원고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는 한 제재 대상인 행위를 한 원고의 청구만 패소판결을 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원고 P1과 P2가 피고를 상대로 한 통상공동소송 중 P1이 제재 대상인 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은 P1에 대하여 제재로 청구 기각 판결을 하고, P2에 대해서는 실제 판단을 하면 된다.

소송공동수행이 원래 요구되지 않지만, 일단 공동원고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송결과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중 일부 원고만 제재 대상이면 어떠한가? 생각건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도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일부 원고에 대하여 제재인 패소판결로 각하판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원고 P1과 P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중 P1이 제재 대상인 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은 P1에 대하여 제재로 각하판결을 하고, P2에 대해서는 실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원고가 복수인 공동소송인 사이에 본안판결 결과가 같아야 하며 공동소송인 중 누락자가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중 일부 원고만 제재 대상이 되면 현행 법리상 그 원고만 달리 패소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실무상 법원은 이로 인하여 제재받을 잘못을 하지 않은 원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금전적 제재와 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택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전체 소송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하고, 원고들 사이에서 제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원고가 책임이 없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고가 결합된 예비적 공동소송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원고만 제재 대상으로 하여 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 해도 될 것 같다.

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

(1) 중국판결

디스커버리 연구반 개정안에 따라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중국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일 것 같다. 즉,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 실제적 진실에 맞게 자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이,¹³²⁾ 피고가 제재 대상인 행위를 한 것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더라도 피고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원고가 복수의 청구를 병합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를 제재하려고 할 때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와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단순병합된 때 피고가 그중 대여금 청구에 관해 제재 대상인 행위를 하였다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청구 부분만 제재로서 원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하고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분은 별도로 실제 판단을 할 것인지 문제다. 이때 피고는 원고와 달리 사건을 단순병합으로 진행할 것을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이 되는 청구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제재로 패소판결을 할 청구가 주위적 청구이면 그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 족하고, 만약 예비적 청구이면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 판단을 한 후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 제재로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주관적 병합인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피고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는 한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피고에 대해서만 제재로 원고 승소 판결을

132)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D1과 피고 D2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공동소송 중 D1이 제재 대상인 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은 D1에 대하여 제재로 원고 청구인용 판결을 하고, D2에 대해서는 실체 판단을 하면 된다.

소송공동수행이 원래 요구되지는 않지만, 일단 공동피고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송결과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중 일부 피고만 제재 대상이 되면 어떠한가? 생각건대, 실무상 법원은 이로 인하여 제재받을 잘못을 하지 않은 피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금전적 제재와 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택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전체 소송에 대하여 피고 패소판결을 하고, 피고들 사이에서 일부 피고의 제재로 인한 책임이 없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피고가 복수인 공동소송인 사이에 본안판결 결과가 같아야 하며 공동소송인 중 누락자가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중 일부 피고만 제재 대상이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피고가 결합된 예비적 공동소송 또는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만 제재 대상인 피고에 대해서 패소판결, 즉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 된다. 다만, 실무상 법원 심리 결과 실체적 진실에 의할 때 피고 D1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D2가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 D2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명하면 될 것이다.

(2) 중간판결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연방법원은 제재적 인용판결을 하더라도 마치 중간판결과 같이 손해액과 구별되는 의미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후 손해액에 대한 배심재판으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Freeman v. Giuliani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defamation) 등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punitive damages claims)에 대하여 제재인 인용판결을 하면서,¹³³⁾ 중국판결(final judgment)을 하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변론하겠다고 하였다.¹³⁴⁾ 이는 제재적 인용판결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자백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¹³⁵⁾ 미국 연방법원이 제재적 인용판결을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자백간주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한 설명을 찾기는 어려우나, 연방 민사소송규칙 8(b)(6)¹³⁶⁾가 답변서(responsive pleading)가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면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¹³⁷⁾

미국과 달리 디스커버리 연구반 개정안은 패소판결이라고만 정하였고,¹³⁸⁾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관련 법률 조항이 손해액에 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다.¹³⁹⁾ 또한, 한국 민사사건에서는 ① 통상 청구 금액을 소 제기시부터 알 수 있고, ② 설사 추후 확장을 예정하고 일부청구를 하더라도 장래 확장할 청구 금액의 범위를 다른 유사 사건들에 관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피고 패소판결을 중간판결로 운영하면서 손해액을 별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게 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중국판결로 패소판결 제재를 기대하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게 과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달리 볼 것

133) *Giuliani*, 2023WL5600316, at 2.

134) *Id.* at 26.

135) *Collin v. Barney's Barn, Inc.* NO:4:12CV00685SWW, 2014WL11510586, at 2 (E.D. Arkansas, Feb. 13, 2014); *Ramshaw v. Ehret*, No. 4:20-CV-00359-NCC, 2023WL6214875, at 2 (Sept. 25, 2023).

136) FRCP 8(b)(6) Effect of Failing to Deny. ("An allegation--other than one relating to the amount of damages--is admitted if a responsive pleading is required and the allegation is not denied. If a responsive pleading is not required, an allegation is considered denied or avoided.").

137) 예를 들어, *Opportunities Development Group, LLC v. Andruss* 사건에서 법원은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인 인용판결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면서 연방 민사소송규칙 8(b)(6)를 인용하고 있다. *Opportunities Development Group, LLC v. Andruss*, No. 1:14-cv-62, 2015WL2089841, at 8 (E.D. Virginia Apr. 30, 2015)

138) 디스커버리 연구반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349조.

139)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이 중간판결로 피고 패소판결의 제재를 한 후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피고 패소판결을 예상하면서 통상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인정할 사건에서 치료비로 수십억 원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중간판결 후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것을 촉구할 수 있을 것 같다.

3. 패소판결에 대한 상소

위와 같이 미국 연방 법리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재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면, 상급심 법원은, 제재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사는 명백한 오인(clear error)이 있는지를, 제재에 대한 심사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를 각 기준으로 하여 제1심법원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한국의 항소법원은 심판 대상을 제1심판결의 당부로 보되, 제1심의 소송자료에 추가하여 항소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도 역시 심사하는 소위 속심제로,¹⁴⁰⁾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¹⁴¹⁾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¹⁴²⁾ 즉, 한국 민사소송 절차상 항소심 법원은 정당성을 기준으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리한다. 비록, 민사소송법이 제재로 한 패소판결에 관하여 별도로 심사기준을 구별하여 두지 않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재로 한 제1심법원 판결을 되도록 존중하여야 다른 사건에서 제재의 효과가 보장될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 항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은 판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하여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한

140)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2022), 724-25면.

141)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142) 민사소송법 제416조.

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여,¹⁴³⁾ 문언상 제1심의 “양정이 부당”한지를 판단할 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보이었다.¹⁴⁴⁾ 이러한 상급심 법원의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관한 존중을 민사소송 절차에서 제재인 패소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IV. 결론

한국식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재 예를 참고하여 패소판결을 입법하려면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상 운영 예를 함께 살펴 한국 민사소송 절차에 맞게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두 나라는 민사소송 절차도 다르고, 실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1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144) 다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그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위법한 것을 구별하였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논문은 미국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중 가장 엄중한 제재인 제재인 패소판결과 제재인 인용판결에 관한 사례를 살폈고, 그 판결로서의 성격과 상소심의 판단 기준을 검토한 후 한국 민사소송 절차에서 제재인 패소판결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생각해보았다. 제재인 패소판결에 대해 상소가 있을 때 상소심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부디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제재 실무가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논문투고일: 2024.3.2., 심사개시일: 2024.3.5., 게재확정일: 2024.3.27.)



▶ 이 준 범

디스커버리, 전자적 디스커버리, 제재인 패소판결, 제재인 인용판결, 제재

【참 고 문 헌】

I. 단행본

-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2022)
Paul W. Grimm, Charles S. Fax & Paul Mark Sandler, 「Discovery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4th ed. 2020)

II. 논문

- 김도훈,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박지원,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의무공개제도와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제5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23)
오대성,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권설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법학논총 제21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2014)
이계정,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9호, 사법발전재단(2022)
전원열,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인권과정의 제 501권, 대한변호사협회(2021)
함영주, “미국연방지방법원 부관사제를 활용한 우리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6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12)
Dan H. Willoughby, Jr., Rose Hunter Jones, & Gregory R. Antine., “Sanctions for E-discovery Violation: By the Numbers”, 60 Duke Law Journal 789 (2010)

III. 기타

-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정보, 회의결과, 제23차 회의 결과안내,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4&gubun=944> (2023. 12. 08. 확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정보, 회의자료, 제23차 회의자료, 4.[자문회의 23차]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7,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0&gubun=943> (2023. 12. 08. 확인)

Abstract

A study on dismissal and default judgment as sanctions for violating discovery obligation under U.S. federal law

The Supreme Court formed the Discovery Research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covery Research Group'), and the Discovery Research Group proposed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the parties involved by introducing dismissal and default judgment as one of the specific measures when introducing Korean-style discovery.

This paper examines the discovery sanctions law in the U.S. federal civil litigation focusing on dismissals and default judgments. In Chapter II of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discovery obligations under U.S. law, and examples of their operation in U.S. practice, focusing on dismissal and default judgment. Chapter III focuses on the implications of the legal principles introduced above when introducing dismissal and default judgment as a sanction when introducing the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Chapter III also discusses considerations when imposing sanctions by a judgment under Korean civil procedure and the standards for appellate courts in the event of an appeal.



Joon Buhm Lee

Discovery, E-Discovery, Dismissal, Default Judgment, Sanction